

의안번호	2211362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5.10.23.
추 계 번호	25B3679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 (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(오염원을 포함한다)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(이하 “연차별 투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31조제1항 (물사용부담금 부과 등)	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음(제1항) 1. 새만금 해수호의 원수(原水)를 공급받는 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0조 (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1조제1항 (물사용부담금 부과 등)	미대상: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내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물사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과·징수 실적이 없으므로, 개정안의 시행은 물사용부담금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30조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, 새만금사업지역의 기존 담수호 기반의 투자계획이 해수호 전환에 따라 해수호 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정규모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해수호 전환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실시여부 및 내용, 기존 담수호 기반 투자계획 대비 사업비 조정 규모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변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, 재정변동 여부와 규모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사업개요

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설명자료

□ 사업목적·내용

- (새만금사업환경대책)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
- (새만금유역 수질 및 환경관리) 정기적인 수질·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부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
- (새만금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 조사연구) 새만금호 내 ‘깨끗한 물’ 확보를 위한 연구
- (새만금 통합환경관리시스템 운영) 새만금유역 전반에 걸친 수질, 수량 및 오염원 등 통합관리
- (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) 새만금 상류 가축분뇨 근원적 해소를 위해 익산 왕궁 한센인 축산단지 환경개선대책 추진
- (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) 새만금 호내 생태복원 및 생태체험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추진
- (용지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) 새만금 상류 가축분뇨 근원적 해소를 위해 용지 축산단지 환경개선대책 추진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적근거
 - 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
 - － 제9조(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)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승인
 - － 제11조(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)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
 - － 제29조(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)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 오염·훼손·위해 예방 및 적정 관리·보전을 위해 환경보전대책 수립·시행, 환경대책 이행사항 점검 및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실시
 - － 제30조(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)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
 - － 제32조(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·관리)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

으로 지정·관리, 특별관리지역 오염원 해소 대책 수립 및 토지 매수 등

○ 추진경위

- '08.10월 : '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' 변경(안) 보고(국무회의)
 - ※ 농지(72%) → 산업·도시·관광 등 복합용도(70%), 농지(30%)
- '10.1월 : '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' 심의·확정(제4차 새만금토)
- ※ 새만금호 수질관리 주무부처 조정 : 농식품부 → 환경부
- '10.7월 : 관계기관 합동 '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' 확정
- '11.1월 : '새만금사업법'에 따라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
- '11.3월 : '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aster plan)' 및 '새만금유역 제2단계('11-'20) 수질개선 종합대책' 심의·확정(제6차 새만금토)
- '11.12월 : '새만금유역 제2단계('11-'20)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실행 계획' 심의·확정(제8차 새만금토)
- '12.11월 :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개발기본계획 수립(환경부, '12.11월)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·확정
 - 사업개요 : 조성면적(49.76km²), 사업기간('11년~'40년), 사업비(1조 1,511억원)
 - 사업시행자: 전북지방환경청('13.1.1부터)
- '14.11월 : 1단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(기재부)
 - 경제성평가(B/C) 1.99, 정책성·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(AHP) 0.770
- '15.6월 ~ '21년 : 1단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완공('21년 개장)
- '21.11월 : '새만금사업법'에 따라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
- '21.12월 : 2단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
- '23.12월 : 익산 왕궁 축사매입 완료(323개, 589,039m²매입, 생태복원 538,204m²)
 - (수질개선) 익산천의 BOD 94.4%(46.3→2.6mg/L, VI→II 등급), T-P 97.1%(3.2→0.093mg/L, VI→II 등급) 개선
 - (악취저감) '12년 31(극심한 악취) → '23년 1(기상에 따른 냄새감지)로 저감

□ 주요내용

○ 사업규모

- 사업기간 : '10년부터 계속

－ 예산

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
사업비(백만원)	23,192	46,357	35,047	26,301	14,189

○ 사업추진체계

－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－ 사업시행주체 : 환경부(전북지방환경청)